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454
----------	-------

발의연월일 : 2025. 12. 19.

발 의 자 : 박정하 · 윤재옥 · 윤한홍
박상웅 · 우재준 · 고동진
한지아 · 진종오 · 김승수
김대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제13조의2(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가 신설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에 대해 체육 행사 주최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 및 점검 등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음.

그러나 현행 조항은 체육 행사 개최자의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체육 행사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음.

특히 마라톤 대회 등의 경우 '24년에 254회가 개최되고 100만 8천여 명의 인원이 참여한 국민생활체육으로 자리잡았고, 앞으로도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수적임.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통보 · 보완 등의 절차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제재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지자체에 대한 안전 관리 검토 및 협조, 점검, 중단 권고 등의 권한을 규정하고 체육 행사를 위한 도로 사용 허가 전 안전관리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55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미리 통보하고, 안전교육·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으로, “관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이 참여하는 체육 행사 안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도로 사용이 필요한 체육 행사의 경우 반드시 안전협의회를 거쳐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할 것
2. 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사항이 이행되었을 것
3.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예산이 확보되었을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할 것

④ 제3항의 체육 행사 안전협의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제6항의 지역안전협의회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의 체육 행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2제3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안전점검 및 체육 행사의 중단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보완 요구를 미이행한 자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2(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 관리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해당 체육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육 행사 <u>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교육·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후단 신설>	제13조의2(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 관리조치) ① ----- ----- ----- ----- <u>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미리 통보하고, 안전교육·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u>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의 안전관리를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안전교육·점검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 설></u> 1. 2. (생략) ② ~ ⑤ (생략)	<u>체육 행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제3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안전점검 및 체육 행사의 중단 등을 권고할 수 있다.</u> ⑥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 <u>필요한</u>----- -----. 제55조(과태료) ① ----- ----- ----- -----. 1.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u>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보완요구를 미이행한 자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u> 2. 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